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작성된 것임)

적용대상 : 본 제품의 제조자,사용고객,대리점,딜러,운송자등 모든 취급자 및 관리자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스페셜리스트 실리콘루브리컨트(SPECIALIST SILICONE LUBRICANT)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금속(철) 녹방지, 금속 마찰면 윤활성 부여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용도 외 사용금지
다. 제조자/공급자/유통업자정보	
유통회사명	백스인터코퍼레이션㈜
주소	서울서초구 양재동 70-3
긴급연락전화	TEL : 02)571-4040 FAX : 02)575-1336
담당부서	기술제품관리부

2. 유해 · 위험성

* 해당 제품은 아래와 같이 GHS분류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가. 유해 · 위험성분류	인화성애어로졸 : 구분 1 흡인 유해성 물질 : 구분 1 특정표적장기독성(1회노출) : 구분 2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물질)에 따른 오존층 유해성 물질 없음
---------------	---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신호어

위험

유해, 위험문구

H222	극인화성 애어로졸
H229	압력용기:열이 가해지면 파열할 수 있음
H304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치명적일 수 있음
H371	신체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예방조치문구
예방

P210	열·스파크·화염·고열로부터 멀리하시오 - 금연
P211	화기 또는 다른 점화원에 분사하지 마시오.
P251	연마·충격·마찰을 피하시오.
P260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 흡입하지 마시오.
P264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

대응	P270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P301+P310 삼켰다면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31 토하게 하지 마시오.
저장	P308+P311 노출 또는 노출이 우려되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405 밀봉하여 저장하시오.
폐기	P410+P412 직사광선을 피하고 40℃ 이상의 온도에 노출시키지 마시오. P501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다. 유해·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위험성

화학물질명	NFPA지수	보건	화재	반응성
수소처리된 경질 정제유 (석유)(DISTILLATES (PETROLEUM), HYDROTREATED LIGHT)		1	2	0
폴리다이메틸실록산(Polydimethylsiloxane)		1	1	0
PROPANE (프로판)		1	4	0
n-BUTANE (노르말부탄)		1	4	0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이명	CAS번호	함유량(%)
수소처리된 경질 정제유 (석유)(DISTILLATES (PETROLEUM), HYDROTREATED LIGHT)	수소처리된 등유 (Hydrotreated kerosene)	64742-47-8	60~80
폴리다이메틸실록산(Polydimethylsiloxane)	다이메틸폴리실록산	63148-62-9	1~5
PROPANE (프로판, 부타디엔 함량 0%)	다이메틸메테인 (Dimethylmethane)	74-98-6	10~30
n-BUTANE (노르말부탄, 부타디엔 함량 0%)	BUTANE	106-97-8	

4. 응급조치 요령

- 가. 눈에 들어 갔을 때 즉시 많은 양의 깨끗한 흐르는 물을 사용하여 적어도 15분 동안 눈을 세척하시오.
즉시 전문의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오.
증상이 발생할 경우 노출원으로부터 피하시오.
-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동상, 동결 상태가 발생하면 많은 양의 미지근한 물(41~46℃)을 사용하여 즉시 세척할 것.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을 제거한 후 노출된 피부를 15분이상 물과 비누로 씻어내시오.
자극이 발생하거나 지속될 경우 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은 재사용 전에 철저히 건조시키고 세탁하시오.
- 다. 흡입했을 때 폭로지역을 벗어나 신선한 장소로 이동하여 신선한 공기를 들이 마시시오.
부작용이 발생하면 오염되지 않은 지역으로 이동시키시오.
호흡하지 않을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되, 구강호흡법을 실시하지 마시오.
즉시 전문의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
- 라. 먹었을 때 구토를 하지 않도록 하시오.
구토가 일어나면 구토물이 기도를 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머리를 둔부보다 낮추시오.
의식이 없을 경우 아무것도 먹이지 마시오.

의식이 있을 경우 즉시 2~4컵의 물이나 우유를 제공하십시오.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마. 의사의 주의사항 특별한 해독제가 없으므로 증상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하시오.
 섭취 하였을 때 식도 내시경 검사를 고려하시오.
 위 세척을 피할 것
 흡입의 경우에는 산소의 공급을 고려할 것

5. 폭발 · 화재시 대처방법

- 가.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 | | |
|----------|-------------------------------------|
| 적절한 소화제 | 입자상 분말 소화약제, 이산화탄소, 일반적인 포말, 물 |
| 부적절한 소화제 | 자료없음 |
| 대형화재시 | 일반적인 소화약제를 사용하거나 미세한 물분무로 대량 살수하시오. |
-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 | |
|-----------|---|
| 열분해생성물 | 탄소산화물, 질소화합물, 황화합물 |
| 화재 및 폭발위험 | 극산화성 가스
고압가스 포함 ; 가열하면 폭발할 수 있음
격렬하게 중합반응하여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할 수 있음
인화점이나 그 이상에서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고인화성: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됨
실내, 실외, 하수구에서 증기 폭발 위험이 있음
증기는 공기와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증기는 점화원까지 이동하여 역화(flash back)할 수 있음
일부는 증발 후 가연성인 잔여물을 남기므로 주의하시오 |
- 다. 화재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위험없이 할 수 있다면 용기를 화재지역으로부터 이동시키시오.
 - 진화된 후에도 상당 시간 동안 살수하여 용기를 냉각시키시오.
 - 물질의 누출을 먼저 중지시키고 진화를 시도하시오.
 - 미세한 물분무로 대량 살수하시오
 - 누출된 물질에 고압 물줄기를 뿌려 비산되지 않도록 하시오.
 - 방호조치된 장소 또는 안전거리가 확보된 장소에서 살수하시오.
 - 물질자체 또는 연소생성물을 흡입하지 마시오.
 - 바람을 안고 저지대를 피하시오.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 유제가 누출되었을 때 보호구(보안경, 내화학성 보호의, 장갑 또는 방독마스크, 공기여과식 호흡보호구)를 착용하고 유제와의 접촉을 피해 누출된 유제를 제거하시오.
-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누출된 물질의 처분을 위해 적당한 용기에 수거하시오.
 관계인 외의 접근을 막고 위험지역을 격리하며 출입을 금지하시오.
 상수도 및 하수도에서 떨어진 곳에 두시오.
-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 | | |
|------|--|
| 소량누출 | 모래 또는 다른 비가연성 물질을 사용하여 흡수시키시오.
누출된 물질의 처분을 위해 적당한 용기에 수거하시오.
관계인 외의 접근을 막고 위험지역을 격리하며 출입을 금지하시오. |
|------|--|

다량누출 추후의 처리를 위한 제방을 축조하십시오.
 발화원을 제거하십시오.
 누출된 물질의 처분을 위해 적당한 용기에 수거하십시오.
 관계인 외의 접근을 막고 위험지역을 격리하며 출입을 금지하십시오.
 분진의 발생을 억제하십시오.
 고효율 진공청소기로 잔류물을 제거하십시오.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취급할 것.
 어린이 손에 닿지 않게 할 것.
 화염, 불꽃, 고온물체와의 접촉, 접근을 금할 것.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 할 것.
 눈이나 피부에 접촉하지 않도록 할 것.
 화기에 주의하여 취급할 것.
 분진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할 것.

나. 안전한 저장 방법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할 것.
 접지 및 접속 필요.
 혼합금지
 밀폐된 용기에 보관할 것.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할 것
 잘 환기된 지역에 보관할 것
 U.S. OSHA 29 CFR 1910.106.접지 및 등전위 접지 필요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 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1)수소처리된 경질 정제유 (석유)(DISTILLATES (PETROLEUM), HYDROTREATED LIGHT)

국내규정	TWA - 200mg/m ³ (skin)
ACGIH 규정	TWA - 200mg/m ³ (skin)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2) 폴리다이메틸실록산(Polydimethylsiloxane)

국내규정	자료없음
ACGIH 규정	자료없음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3) PROPANE(프로판)

국내규정	자료없음
ACGIH 규정	자료없음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4) n-BUTANE (노르말부탄)

국내규정	TWA : 1900 mg/m ³ , 800ppm
ACGIH 규정	TWA : 1000ppm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국소배기 또는 공정 밀폐 환기장치를 설치하십시오
 물질이 폭발농도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기장치는 방폭설비를 하시오.

해당 노출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시오.

다. 개인 보호구

호흡기 보호	사용 빈도가 높거나 노출이 심한 경우에는 호흡용 보호구가 필요함. 호흡보호는 최소 농도부터 최대농도까지 분류됨. 사용전에 경고 특성을 고려할 것. 호흡용 보호구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정('안' 마크)를 필할 것.
눈 보호	비산물 또는 유해한 액체로부터 보호되는 보안경을 겹쳐 사용할 수 있는 보안면을 착용. 가까운 곳에 분수식 눈 세척 시설 및 비상세척설비(샤워식)를 설치할 것
손 보호	적절한 내화학성 장갑을 착용할 것.
신체 보호	적절한 내화학성 안전복(일반작업복 포함) 및 안전화를 착용할 것.

9. 물리 · 화학적 특성

가. 외관	무색 액상
나. 냄새	석유 냄새
다. 냄새역치	자료없음
라. pH	자료없음
마. 녹는점/어는점	자료없음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221℃ (수소처리된 경질 정제유)
사. 인화점	-30℃
아. 증발속도	자료없음
자. 인화성(고체, 기체)	자료없음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0.6/5.0
카. 증기압	0.07 mmHg @ 20℃ (수소처리된 경질 정제유)
타. 용해도	물에 불용
파. 증기밀도	5.3 (수소처리된 경질 정제유)
하. 비중(15/4℃)	자료없음
거. N-옥탄올/물 분배계수	자료없음
너. 자연발화온도	자료없음
더. 분해온도	자료없음
러. 점도(mm ² /s, 38℃)	자료없음

머. 분자량

혼합물로 자료없음.

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상온, 상압에서 안정함

나. 유해 반응의 가능성

불완전 연소시 일산화탄소, 황화합물, 질소화합물을 발생시킬 수 있음

다. 피해야 할 조건(정전기 방전, 충격, 진동 등)

열, 화염, 스파크 및 기타 점화원과 접촉을 피하십시오.

혼합금지 물질과의 접촉을 피하십시오.

용기가 열에 노출되면 파열이나 폭발할 수도 있음

상수도 및 하수도에서 떨어진 장소에 저장하십시오.

라. 피해야 할 물질

가연성물질, 산화제, 염기, 산, 환원제

마.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일산화탄소 또는 악취가 발생할 수 있음.

열분해 산물로 유독한 탄소산화물이 포함될 수 있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 제품에 관한 독성정보자료가 없으므로, 구성 성분별 자료를 기재함(참고)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호흡기 자극, 구역, 구토, 호흡곤란, 불규칙 심장박동, 두통, 졸음, 현기증, 조정(기능)손실, 폐울혈, 의식불명, 감정변화, 질식, 경련, 혼수, 피로, 지남력 상실, 얼얼한 느낌

경구 자극, 구역, 구토, 호흡곤란, 불규칙 심장박동, 두통, 졸음, 현기증, 경련, 조정(기능)상실, 폐울혈, 의식불명, 흡인위험, 설사

피부접촉 자극, 피부장애

눈접촉 자극

나. 단기 및 장기 노출에 의한 지연, 급성 영향 및 만성 영향

* 화학물질의 명칭이 너무 길어 아래와 같이 성분 1, 2로 구분함

성분 1. 수소처리된 경질 정제유 (석유)(DISTILLATES (PETROLEUM), HYDROTREATED LIGHT)

성분 2. 폴리다이메틸실록산(Polydimethylsiloxane)

성분 3. 프로판

성분 4. 부탄

급성독성 경구 분류되지 않음 (분류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성분의 함량:20%)

ATEmix = 15224 mg/kg

성분 1. LD50>15000mg/kg(RAT), IUCLID

성분 2. LD50>17000mg/kg(RAT), IUCLID

성분 3. 자료없음

성분 4. 자료없음

경피	분류되지 않음 (분류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성분의 함량:20%) ATEmix = 2000 mg/kg 성분 1. LD50>2000mg/kg(RABBIT), IUCLID 성분 2. LD50>2000mg/kg(RABBIT), IUCLID 성분 3. 자료없음 성분 4. 자료없음
흡입	분류되지 않음 (분류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성분의 함량:5%) 성분 1. LD50>5.2mg/kg(미스트, RAT 4hr), IUCLID 성분 2. 자료없음 성분 3. LD50 570000 ppm(RAT 15min) 성분 4. LD50 277374 ppm(미스트, RAT 4hr), IUCLID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분류되지 않음 (분류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성분의 함량:30%) 성분 1. 비자극성(RABBIT), IUCLID 성분 2. 자료없음 성분 3. 자료없음 성분 4. 자료없음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분류되지 않음 (분류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성분의 함량:30%) 성분 1. 비자극성(RABBIT), IUCLID 성분 2. 자료없음 성분 3. 자료없음 성분 4. 자료없음
호흡기과민성	자료없음
피부과민성	분류되지 않음 (분류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성분의 함량:30%) 성분 1. 비자극성(GUINEA PIG), IUCLID 성분 2. 자료없음 성분 3. 자료없음 성분 4. 자료없음
발암성	자료없음
생식세포 변이원성	분류되지 않음 (분류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성분의 함량:30%) 성분 1. in vitro 미생물복귀돌연변이시험음성, in vivo 마우스소핵시험 음성 성분 2. 자료없음 성분 3. 자료없음 성분 4. 미생물을 이용한 복귀 돌연 변이 시험 - 음성
생식독성	자료없음
특정표적장기독성(1회노출)	구분2 중추신경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고농도 증기 흡입은 의식 상실을 일으킬 수 있음.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	자료없음

흡인유해성

구분 1(분류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성분의 함량:30%)

성분 1. 액체를 삼켰을 경우 폐로 흡인이 일어나 화학적 폐렴을 일으킬 수 있음. ICSC

성분 2. 자료없음

성분 3. 자료없음

성분 4. 자료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수생·육생 생태독성

분류되지 않음(분류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성분의 함량:20%)

어류

성분 1. LC50 > 2.4mg/l 96hr *Oncorhynchus mykiss*, ECOTOX

성분 2. LC50 37.79mg/L 96hr *Lepomis macrochirus*

성분 3. 자료없음

성분 4. 자료없음

조류

자료없음

갑각류

성분 1. 자료없음

성분 2. EC50 44.5 mg/l 48 hr *Daphnia magna*

성분 3. 자료없음

성분 4. 자료없음

나. 잔류성 및 분해성 자료없음

다. 생물농축성

농축성

자료없음

성분 2. BCF 130~159 (*Jordanella floridae*(Fish, fresh water) 1 mg/l) .IUCLID

생분해성

성분 1. 4% 28day, 호기성, 가정하수, 쉽게 분해되지 않음

성분 2. 자료없음

성분 3. 65.7% 35day

성분 4. 65.7% 35day(호기성, 미생물, 매우 잘 분해됨)

라. 토양이동성

자료없음

마. 기타유해 영향

자료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 방법

폐유기용제

기름과 물 분리가 가능한 것은 기름과 물 분리 방법으로 사전 처리하여야 함.

규정에 따라 폐기할 것. 규정 : U.S. EPA 40 CFR 262, 유해폐기물 번호 D001 적용

폐기물관리법(법률 제4363호) 제25, 26조에 의해 규제

나. 폐기시 주의사항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44조제2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또는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의 규처에 의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
개인보호 장비(보호안경, 보호장갑, 보호마스크, 안전복, 안전화)착용할 것.
빈 용기에 압력을 걸면 파열하는 경우가 있음
빈 용기에 용접, 가열, 구멍을 뚫거나 절단하면 폭발하여 잔류물이 발화하는 경우가 있음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유엔번호(UN NO.)	UN 1950
나. 적정 선적명	AEROSOLS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2
라. 용기등급	자료없음
마. 해양오염물질	해당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 시 비상조치	F-D
유출 시 비상조치	S-U

15.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	노르말부탄 노출기준설정물질 수소처리된 경질 정제유 노출기준설정물질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자료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 제4류 2석유류(원액)
라.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법률 제453호) 제25조에 의해 관리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CERCLA 103 규정(40CFR302.4) : 규제대상 아님 SARA 302 규정(40CFR355.30) : 규제대상 아님 SARA 304 규정(40CFR355.40) : 규제대상 아님 SARA 313규정 (40CFR372.65) : 규제대상 아님 OSHA 규정(29CFR1910.119) : 규제대상 아님

16. 기타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BIT범우연구소 보유정보(원료 공급사의 MSDS 및 소유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법률 제4363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나. 최초작성일	2013.11.26
다.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	1
최종개정일자	2017.3.16.

라. 기타사항

본 MSDS에 기재된 의견은 당사와 원료공급사의 자료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서, 현시점에서 최신의 정보일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화학제품에는 미지의 유해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 자료에 규정된 위험유해물질들은 존재하는 모든 위험유해물질이 기재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고객 및 잠재고객께서는 본 정보를 검토하시고, 주의사항을 신중히 살펴보셔야 하며, 본 제품의 사용과 폐기에 관련된 적용법과 규제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 자료는 오직 제품취급자의 건강, 안전 및 환경상의 요구를 기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제품의 특정한 성질을 보증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됩니다. 본 제품의 실제의 적용에 있어서 당사의 통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자료의 사용결과에 대한 어떤 책임도 전제되어 질 수 없으므로, 최종적인 적합성의 평가는 오직 사용자의 책임이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료는 통상의 취급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특수한 취급의 경우에는 용도, 용법에 적합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본 자료는 새로운 정보를 토대로 개정될 수 있고, 또한 본 제품의 사용전 제품사양서(카타록)와 포장용기에 부착된 취급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